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명(5급 4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(4급 또는 5급 4명)하고,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1명(5급 1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(4급 또는 5급 1명)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4. 5. 10. ~ 5. 17.)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2 중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서사무관·기상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항공사무관·부감사관·공업연구관·학예연구관·편사연구관·농업연구관·임업연구관·해양수산연구관·기상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“72”를 “76”으로 하고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서사무관·기상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항공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부감사관·공업연구관·학예연구관·편사연구관·농업연구관·임업연구관·해양수산연구관·기상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“305”를 “301”로 한다.

별표 4의2 중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환경

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“7”을 “8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“39”를 “38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)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부감사관 · 공업연구관 · 학예연구관 · 편사연구관 · 농업연구관 · 임업연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· 기상연구관 · 보건연구관 ·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4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

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부감서관 · 공업연구관 · 학예연구관 · 편사연구관 · 농업연구관 · 임업연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· 기상연구관 · 보건연구관 ·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4명으로 본다.

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으로 본다.